

최저임금 안내

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

2026년 최저임금

시급 10,320원

월 환산액 2,156,880원 (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)

효력 발생일 :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
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

산입하지 않음	·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· 주휴수당 · 연차 미사용수당 · 그 밖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것
산입함	· 기본급 ·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· 식대·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(2024년부터 전액)

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

-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— 최저임금의 90% 적용
(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)
- 정신·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
-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, 가사사용인, 선원

우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: _____

게시일 : 20 년 월 일

사업장명 : _____ 대표자 : _____

작성 기준: 최저임금법 제11조(주지 의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
· 최저임금액, 산입하지 않는 임금,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, 효력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.

·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(같은 법 제31조).

·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. 새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새 안내문으로 바꿔 게시하세요.